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57호 2016. 9. 21.(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6-88호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6-927호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및 폐지(안) 공고 4

거창군 공고 제2016-928호 거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9

회 람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21.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773-47 외 8건(부여 7건, 변경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 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247-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사동3길 4	2009- 04-01	2016- 09-21	마을 서북 1킬로미터 산골짜기에 분청사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 번째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2길 35-23	2009- 04-01	2016- 09-21	정장길 시점으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거리 708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장포길 42	2009- 04-01	2016- 09-21	임진왜란 때 옮겨온 유성근이 103세, 그 아들이 93세를 살았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3-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859-6	2009- 07-02	2016- 09-21	거창군 거창읍과 함양군 안의면을 연결하는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182-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내춘길 108-17	2009- 04-01	2016- 09-21	내춘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88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1198-63	2009- 12-28	2016- 09-21	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355-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가북면 742-6	2009- 12-28	2016- 09-21	가북으로 가는 길로 불려진 것에서 유래	

○도로명주소폐지

일련 번호	폐지도로명주소		고 시 일		폐지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 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30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302-1	2009- 12-28	2016- 09-21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물 등이 있으면 해당도로 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 등부터 가지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나 잘못 부여되었고 현장확인 결과 건물번호판은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어 변경이 필요함	
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302-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302	2009- 12-28	2016- 09-21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안)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 기초구역을 설정·변경 및 폐지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6. 10. 4.까지 거창군 민원봉사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1일
거창군수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

○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안) 현황

시군구명	설정 등 현황			예비구역번호 수
	설정	변경	폐지	
거창군				46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현황은 별첨과 같으며 이를 시군구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하며 이를 거창군 민원봉사실 (☎055-940-33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자료량이 많아 파일 게시가 곤란할 경우 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 2016. 10. 19.

4.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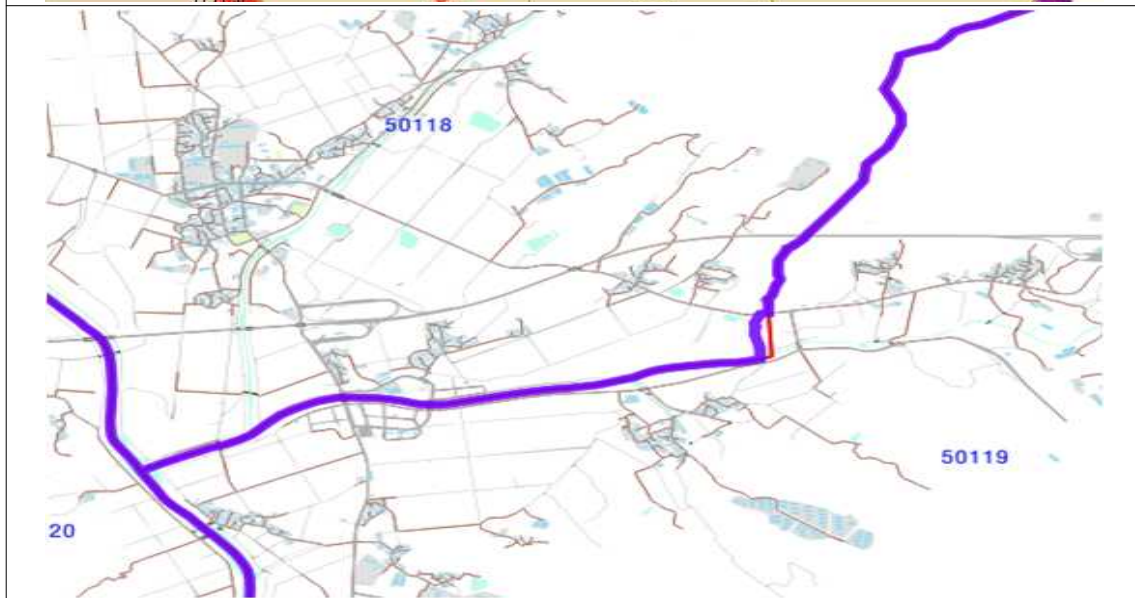
거창군 민원봉사실 (☎055-940-3313)

《별지 4호 서식》

1.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안) 현황

※ 도면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이나 거창군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따로 열람할 수 있음

구역번호	50118
국가기초구역 설정기준	기타(구거) 이루어진 기초구역.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 사유	현재 뚜렷한 경계가 없어 구거를 기준으로 기초구역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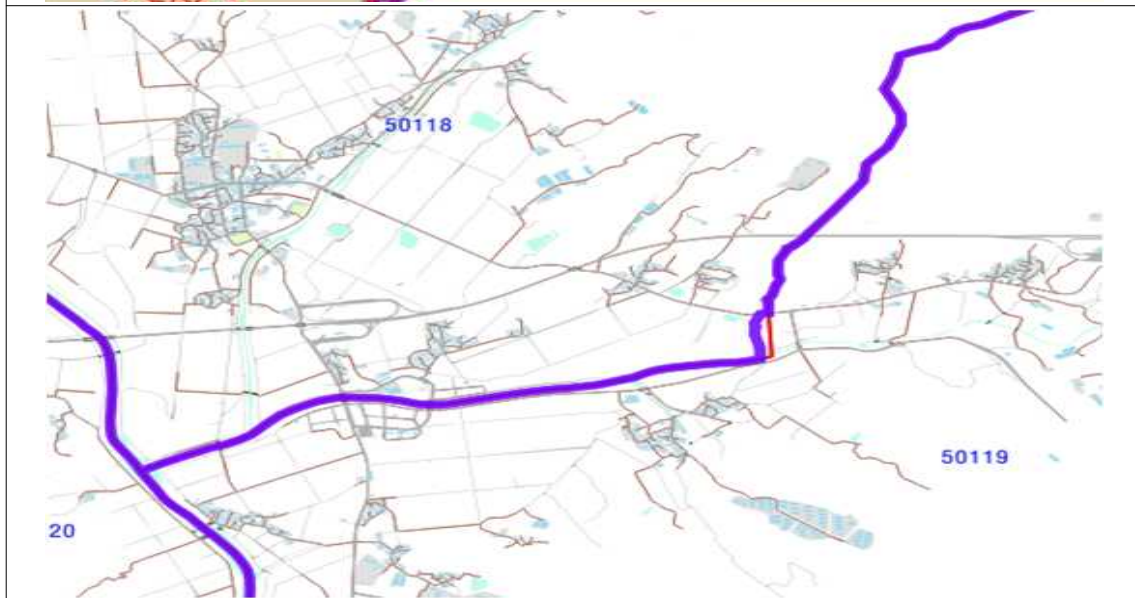


《별지 4호 서식》

1.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안) 현황

※ 도면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이나 거창군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따로 열람할 수 있음

구역번호	50119
국가기초구역 설정기준	기타(구거) 이루어진 기초구역.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 사유	현재 뚜렷한 경계가 없어 구거를 기준으로 기초구역을 변경



《별지 4호 서식》

1.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안) 현황

※ 도면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이나 거창군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따로 열람할 수 있음

구역번호	50147
국가기초구역 설정기준	기타(구거) 이루어진 기초구역.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 사유	현재 뚜렷한 경계가 없어 구거를 기준으로 기초구역을 변경



《별지 4호 서식》

1.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안) 현황

※ 도면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이나 거창군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따로 열람할 수 있음

구역번호	50148
국가기초구역 설정기준	기타(구거) 이루어진 기초구역.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 사유	현재 뚜렷한 경계가 없어 구거를 기준으로 기초구역을 변경



거창군 공고 제2016-928호

거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규칙을 제정·운영하였으나 2011. 9. 15. 동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의 근거조항 삭제로 존치 필요성 없음.
- 동 시행령 및 그 위임받은 행정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상위법을 단순 확인하고 재기재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방지하여 계약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을 폐지함.

3. 입법예고기간 : 2016. 9. 21. ~ 2016. 10. 10.(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재무과
- 우편번호 : 50132, 전화 : (055)940-3243, 팩스 : (055) 940-3219,
이메일 : ks3377@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거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 1부.

거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2016 ~
----------	--------

제출연월일	2016. 9. .
제 출 자	재 무 과 장

1. 폐지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규칙을 제정·운영하였으나 2011. 9. 15. 동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의 근거조항 삭제로 존치 필요성 없음.
- 동 시행령 및 그 위임받은 행정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상위법을 단순 확인하고 재기재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방지하여 계약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6. 9. 21. ~ 2016. 10. 10.(20일간)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거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9.15 개정 전>

[시행 2011.8.1.] [대통령령 제23051호, 2011.7.28.,

타법개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⑦

⑧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른 설계서 작성 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2011.9.15 개정 후>

[시행 2011.12.16.] [대통령령 제23134호, 2011.9.15.,

일부개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2014.11.19.>

② ~ ⑦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⑬ 제12항에 따른 설계서 작성 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거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재무과) (시행일 : 2015.02.04)

(제정) 2010.11.24 규칙 제1069호
(일부개정) 2014.07.30 규칙 제1162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15.02.04 규칙 제1177호 타 규칙 개정(거창군 재무회계규칙 부칙)

관리책임부서 : 재무과
연락처: 055)940-32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발주기관의 공무원을 3명까지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해당 분야 전공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
7.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평가위원의 선정 등)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는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예비 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 및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위촉 및 해촉)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안서 제출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해당 제안서의 평가에 포함된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다른 평가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되,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회의에 올릴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제9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기관의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기관의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 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부칙<규칙 제1069호, 2010.11.24,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제1177호, 2015.2.04.>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거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